대학혁신지원사업운영규정

제정 2019. 7. 1.
개정 2020. 5.11.
개정 2020. 7. 1.
개정 2021. 7. 1.
개정 2022. 3. 2.
개정 2022. 5. 2.
개정 2023. 7. 1.
개정 2024. 3. 1.
개정 2024. 9. 1.
개정 2025. 1.15.
개정 2026. 7.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따라 을지대학교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및 구성) ① 대학혁신지원사업 전담조직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이하'사업단'이라 한다)을 두며, 사업단에 사업총괄본부를 두며, 사업 운영은 각 해당 부서에서 실행한다. (개정 2020.7.1.)

② 사업단에 단장을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

③ 사업총괄본부에 기획조정팀, 데이터성과분석팀, 예산팀, 교육혁신팀, 기타혁신팀을 두고, 세부 사업팀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7.1., 2021.7.1., 2022.5.2., 2026.7.1.)

④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전담교수와 전담인력을 둘 수 있으며, 전담교수는 사업단장의 요청에 따라 총장이 임용한다.

⑤ 사업총괄본부장은 사업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6.7.1.)

제3조(임무) ① 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기획조정팀, 데이터성과분석팀, 예산팀은 기획조정처 기획조정팀, 데이터성과분석팀, 예산팀이 업무를 수행하고, 교육혁신팀은 기획조정처 데이터성과분석팀, 교무혁신처, 학생처 진로 취·창업센터, 인권센터, 한마음봉사단, 사무처 총무관리팀, 시설안전관리팀, 교양학부, 국제교류원, 학술정보원, 기타혁신팀은 기획조정처 기획조정팀, 을지HT특성화사업단, 대외홍보처 홍보팀, 사무처 총무관리팀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5.11., 2020.7.1., 2021.7.1., 2022.5.2., 2023.7.1., 2024.3.1., 2024.9.1., 2025.1.15., 2026.7.1.)

③ (삭제 2020.7.1.)

제4조(역할)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의 총괄적인 수행·관리·지원
2.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별 예산 책정
3. 사업비의 총괄적인 집행 및 관리

4. 사업 집행 및 성과지표 모니터링
5.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6. 사업실적 및 성과의 홍보와 확산
7. 사업 자체평가 관리 및 부진사항 조치계획 수립·시행
8.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의 정비
9.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연차평가보고서 작성
10. 그 밖에 사업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

제5조(대학혁신지원사업운영위원회) ① 사업 추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및 재학생을 포함한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22.3.2., 2022.5.2.)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7.1.)

1.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2. 사업비 세부 집행지침 마련 및 사업비 예·결산 심의
3. 사업 집행과정 및 성과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 결과 심의 및 피드백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성과관리를 위하여 자체평가소위원회와 영역별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2.5.2.)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3.2.)

제6조(자체평가소위원회) ① 사업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소위원회(이하'평가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5.2.)

② 평가소위원회는 자체평가의 독립성을 위해 부총장(의정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학생 및 내부위원,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20.5.11., 2022.3.2., 2022.5.2.)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평가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5.2.)

1. 사업성과 및 실적평가를 위한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
2. 성과목표 달성 여부 및 사업 추진 실적 분석
3.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또는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 및 조치계획 수립
4.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
5. 그밖에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3.2.)

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평가소위원회 산하에 영역별자체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2.5.2.)

제6조의2(영역별자체평가위원회) ① 영역별자체평가위원회는 사업 영역별 성과의 점검 및 자체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과 무관한 외부전문가, 내부위원을 포함한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신설 2022.5.2.)

1. 영역별 사업 성과분석 및 추진실적 평가
2. 사업의 추진 과정 수시 모니터링

제7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평가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5.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사업비는 대학회계에 편성하여 집행한다.

② 이 사업은 사업위탁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요령」, 대학회계 예산 관련 규정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대학 자체 기준 등에 따라 집행한다. (개정 2020.7.1.)

③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증빙서류는 사업 종료 후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세부사항) 그 밖에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7.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수행된 사업단의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규정의 폐지) 이 규정은 사업이 중단되거나 종료되는 때에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